

광주지방법원 2023. 11. 17 선고 2022나692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3. 11. 17 선고 2022나69277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2. 11. 16 선고 2022가단51474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비

담당변호사 백준홍

변론종결 2023. 10. 6.

판결선고 2023. 11. 17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. 11. 16. 선고 2022가단514745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E 사이에 2018. 9. 3.자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3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인용

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흥권, 판사 장유나, 판사 김동희